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‘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을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국가역점시책 수행 및 지역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조정 : 591 ⇒ 595명 (증4)
○ 직급별 정원

- 일반직 정원 조정 : 559 ⇒ 563명
- 본 청 정원 조정 : 301 ⇒ 303명
- 읍 면 정원 조정 : 158 ⇒ 160명

※ 의회 11, 직속기관 90, 사업소 31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(직급별 정원) 및 제30조(정원의 규정)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‘17년도 기준인건비 반영)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9470(2017.10.20.)]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)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7.10.19. ~ 2017.11.08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AI 방역업무, 복지허브화 추진, 생활사 문화유적 정비 및 자원화사업 등 국가정책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,

-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559명에서 563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당초 591명에서 595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.
- 관리기관별로는 AI 방역업무 강화, 생활사 문화유적 정비·자원화사업을 위해 성주군 본청에 2명이 증원되고, 읍면은 복지허브화 3권역 추진에 따라 2명이 증원되었으며, 의회, 직속기관, 사업소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.
- 또한, 별표 3 직급별 정원표의 내용 중 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, 9급 1명 등 일반직 6급 상당 이하가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.

○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정원조정을 통해 직급별 승진 확대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